

# 신행정수도충청권이전대책특별위원회명칭변경의견

의안 번호	203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04. 5. 27.  
 제출자 : 신행정수도충청권  
 이전대책특별위원장

## □ 제안이유

- 신행정수도의 충청권 이전을 위하여 구성된 『신행정수도충청권 이전대책특별위원회』의 명칭이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과 동법 시행령이 제정 공포되었고, 대통령 직속의 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, 신행정수도의 충청권 이전이 확정되고 구체적으로 추진됨에 따라,
- 향후 입지선정과 도시건설 등 건설분야가 실질적인 현안이 될 것이므로 신행정수도의 건설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명칭을 변경하고자 함.

## □ 주요내용

- 명칭변경 : 『신행정수도충청권이전대책특별위원회』 명칭을  
 ⇒ 『신행정수도건설지원특별위원회』로 변경함.
- 존속기간 : 제7대 충청북도의회 임기 말까지

## □ 관련법규

-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제8조
- 충청북도의회위원회조례 제7조

## 관 계 법 령 발 취

### □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

제8조(예정지역등의 지정대상지역)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(이하“예정 지역등”이라 한다)은 대전광역시·충청북도·충청남도 일원(이하 “충청권”이라 한다)의 지역 중에서 지정한다.

### □ 충청북도의회위원회조례

제7조(특별위원회) ①의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본의회의 의결로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②의회는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.

③의원의 자격심사,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. (개정 98. 3. 6)

④특별위원회는 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. 다만, 그 사안에 대한 심사대상이 수시로 발생하여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의회의 의결로 그 존속기간을 정할 수 있다. (개정 93. 7. 2)